



: 2018-06-1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10862 거부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8. 5. [REDACTED]구 [REDACTED]로 [REDACTED]동 [REDACTED]호에서 금형제조업 등을 목
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31.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공장용지 4,098.7㎡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843.0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경락받고, 피고에게 취득가액 1,260,4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50,417,600원, 농어촌특별세 2,520,880원, 지방교육세 5,041,760원 합계 57,980,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2. 원고가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 또는 기존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4.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7. 5.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도지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 11. 24. 기각 결정을 하고 2016. 11. 25. 그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17.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위 결정통보를 받은 날이 2016. 1. 25.이라면 위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도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므로 위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 2018-06-1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은 2016. 11. 28.인 사실, 그런데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날은 2017. 2. 24.인 사실인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심판청구기간 내인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자금력이 부족한 원고가 창업 직후인 사업초기에 자산을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동종 업체가 사용하던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개시일로부터 불과 1년만에 신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29 회생절차에서 경매채무자인 주식회사 에스와 이테크놀로지가 2013. 9. 3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경매절차가 실효되었다.

3) 원고는 2015. 10. 17.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라고 한다)로부터 금형제조



업에 사용 중이던 [redacted] 구 [redacted] 로 [redacted] 소재 건물 1층 99.17m² 및 기계 일부를 임차하여 2015. 10. 26.부터 2015. 12. 31.까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redacted] 산업 등 12개 업체에 금형부품을 납품하고 344,513,977원의 매출을 올렸다.

4) 위 회생절차에서 2015. 1. 21. 회생절차 폐지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자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5) 원고는 2016. 6. 15.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옮겼음에도 [redacted] 로부터 임차한 건물에서 금형제조업을 계속하다가 2016. 8.경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금형제조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한라산업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게 금형부품을 납품하고 248,968,222원의 매출을 올렸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호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 제100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제1호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5.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15. 10. 17. [REDACTED]로부터 동종 업종에 사용 중이던 건물 등을 임차하여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금형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00조 제6항 제1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위 법률 제100조 제6항 제1호의 '자산을 인수한 경우'



: 2018-06-12

에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자금력이 부족하여 공장시설 등을 기존 업체로부터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규정한 위 법률 제58조의3, 제100조 제6항의 입법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



: 2018-06-12

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